

광주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1가단434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임진석

피 고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신

담당변호사 지혜롬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성익

변 론 종 결 2021. 10. 26.

판 결 선 고 2021. 11. 16.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20. 3.경 피고 B으로부터 마스크 20,000장을 공급받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마스크 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마스크 공급약정을 ‘이 사건 마스크 공급약정’이라 한다).

(2)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이 사건 마스크 공급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CEO”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주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선택적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

피고 회사도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마스크 공급약정의 당사자이고,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마스크 공급약정에 따른 마스크 공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마스크 공급약정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2021. 10. 20.자 준비서면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회사도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마스크 공급약정의 당사자이고,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마스크 공급약정에 따른 마스크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을 하면서 원고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마스크 대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B의 책임근거 : 민법 제750조, 피고 회사의 책임근거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채무불이행

가) 피고 B이 원고와 이 사건 마스크 공급약정을 체결하고도 그때부터 1년 7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주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피고 B은 D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아 원고에게 이를 공급해 주려고 하였으나 D이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에 E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기 위하여 E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E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원고에게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 B에게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 4호증(피고 B이 E를 고소한 고소장, 피고 B의 지인 F의 사실확인서, D의 현금보관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

원고가 이 사건 마스크 공급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2021. 5. 14.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마스크 공급약정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피고 B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최고의 의사표시 없이 이 사건 마스크 공급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마스크 공급약정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선택적 청구 중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므로, 나머지 선택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는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 상청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각 청구는 피고 회사도 이 사건 마스크 공급약정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이 사건 마스크 공급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라는 취지의 명함을 사용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마스크 대금의 환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9. 14. 이행권고결정을 받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20가소62206), 위 이행권고결정이 2020. 10.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도 이 사건 마스크 공급약정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주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9. 23. 피고 B을 마스크 대금 편취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옥희